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의 요약

- 의제배당 과세소득(이익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금액·법인익금산입,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됨)
 - 자본감소, 감자차익,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 무상주 교부액, 토지관련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 회사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거래에서 회사자체가 자기주식보유로 인해 회사 아닌 다른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해산법인주주의 잔여재산분배초과액, 합병관련차익, 법인분할관련차익(자기보유주식에 대한 자본준비금 등의 2년 후 자본전입관련 무상주 교부액은 익금불산입됨), 자기주식소각익의 소각일 부터 2년내 자본전입, 채무의 출자전환거래시 시가와 발행가액의 초과차액(일종의 채무면제익임)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항목 : 익금불산입항목
 -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교부, 토지 이외 일반재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의제배당 익금산입시점 : 주총 등의 결의일, 사원의 퇴사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등
- 의제배당계산시 재산가액평가액 : 주식인 경우 액면가·출자금액, 주식배당은 발행금액, 일반재산의 시가, 무액면주식가액은 발행자본금 등(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주식배당은 "0"으로 함)
- 각 주식변동 법률 행위별 의제배당의 익금산입 여부

행위·거래	의제배당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일반감자, 퇴사	감자차익	
무상증자 : 자본전입	일반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토지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 일반재평가적립금, 합병·분할 자기자본 등의 조정차익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대한 배정액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증자시 자사주보유법인 이외에 다른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더 증가한 당해 법인주주의 주식가액 2년내 자본전입	당해 법인 자체가 받는 배당, 자기주식소각익의 무상증가차익 중 2년 후 자본전입
기 타	해산·분할·합병관련 차익	차익이 없는 경우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併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併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본 조의 개관

1. 본 조의 개요

배당금이나 분배금 등은 순자산 사항이며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 즉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에서 이익의 처분을 의결하여 받기로 확정된 날의 손익으로 귀속시킴이 일반적이다. 본 조는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배당금·분배금은 아닐지라도 배당금 및 분배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아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현금배당 실제 수입이나 현물배당금 수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입을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다.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 등의 감자나 합병과 법인해산 및 법인분할 등으로 주주·사원 및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 초과금액은 당해 사유발생시의 배당이나 분배금으로 보아 당연도 익금으로 산입한다.

이밖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및 출자가액과 기타 금전의 합계액이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주식 및 출자소요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배당 및 분배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법인의 잉여금액을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하여 수령하는 무상주 등의 액면가액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도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주전입 중 법인자체보유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에 대해 자사주보유법인은 무상주를 받지 않는데, 다른 주주나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더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 상당 주식가액은 다른 주주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외국에서 외국자회사의 배당순수입이 들어 오는 경우 외국자회사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데 해당액을 세액공제하는 경우는 선납세액이므로 상대방 계정금액은 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처리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2. 배당금·분배금 의제의 개념

영리법인은 이를 설립한 주주·출자자 및 지분권자가 법인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을 배당받거나 분배받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분배금 등도 주주총회 등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의를 하여 배당으로 확정되는 때에 주주차원의 순자산이 증가되거나 소득이 원천적으로 발생되어 익금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적 과정에 의한 익금 및 배당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인에 비정상적인 사유가 발생되는데, 정상적인 1년 운영활동 이외에는 모두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인수·매각·청산·증자·감자·잔여재산 분배 등의 여러가지 법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요즘같이 빈번한 M&A(인수합병)거래에서 인수인계하는 주주 사이에 재산의 변동이 생긴다. 이때 당초의 주주가 그 법인의 설립이나 인수할 때 소요된 금액 이상의 매각대금이나 잔여재산 분배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상적 영업과정에서 확보받지 못한 이익 혹은 잉여금의 분배액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은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보아야 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법인이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명확히 이익이 귀속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여야 과세시기를 확정한다. 이러한 개념을 잉여금, 배당금, 분배금의 의제라 한다.

II. 익금산입되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의 유형

1. 의제배당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① 배당·분배 의제시기와 손익귀속연도

이익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익금으로 산입한다. 각 의제배당 형태별로 객관적으로 수익인식이 명확히 파악되는 날을 손익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 주식소각, 자본감소, 사원퇴사·탈퇴, 출자금감소 등, 잉여금의 자본전입, 자

기주식보유분에 대한 타인배정주식·채무의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의 등→주
총·사원총회·이사회가 주식소각·자본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을 결
의한 날, 사원의 퇴사일·탈퇴일 등 임.

- ◎ 법인해산시 잔여재산분배인 경우 → 잔여재산의 가액 확정일
 - ◎ 법인합병시의 피합병법인소멸 등 → 합병등기일
 - ◎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관련 차익 → 분할등기일
-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
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
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
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2. 주식소각, 자본감소,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법 제16조제1항제1호)

① **보상액과 취득원가의 차액**

주식의 소각 및 자본의 감소는 상법 제438조가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감자)
개념으로서 동법 제434조에 의한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인 과반수 주주총회에 3
분의 2 이상의 다수의결권으로 결의하여 결정된다.

감자로 인한 분배금 의제액은 감자로 인한 취득총액과 감자지분 취득의 소
요액의 차액이므로 주식소각, 자본감소결의일이나 사원퇴사일 등이 속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

1) 주식외사인 경우

주식회사에서 주식소각시 차익이 암묵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의제배당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boxed{\text{의제배당액}} = \boxed{\text{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해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금전+기타 재산가액)}} - \boxed{\text{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원래 지출 소요한 금액}}$$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주식을 유상으로 대가를 주고 소각하는 방법과 주식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소각하는 방법이 있다. 본 호에서는 여러 유형의 주식소각, 병합이나 자본감소방법 중에 주당 일정금액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반환 지급하는 경우와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는 경우만을 유상감자로 하여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한다.

2) 압명·압자·유안외사인 경우

주식회사가 아닌 상법상 회사 등의 의제배당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주식회사와 비슷하다.

$$\boxed{\text{의제배당액}} = \boxed{\text{사원 퇴사·탈퇴나 출자금감소로 인해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금전액+기타 재산액)}} - \boxed{\text{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는 주식이 없고 출자증서만 있으므로 당해 출자증서의 표시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자본감소에 해당한다.

3)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기타 재산가액 계산

① 주식의 액면가 및 재산의 정상시가

◎ 의제배당액 = 해당 사유 관련 수취하는 $\boxed{\text{금전} \oplus \text{기타 재산가액}}$ ⊖ 당초 취득 소요금액

- ◎ 금전으로 수취하는 금액 ⇒ 해당 금전액면가
 - ◎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자산·권리인 경우
 - 기존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 등 : 당해 주식액면가액·출자가액(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0”)
 - 합병·분할대가 : 적격 합병, 분할 및 완전자회사합병 등의 경우 장부가액(시가<장부가액인 경우는 시가)(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0”으로 함)
 - 합병·분할시 신주가액 : 시가가 액면가보다 큰 경우, 즉 시가 > 액면가액인 경우에 한해 액면가액
 -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인 경우 : 주식의 발행금액(투자회사 등이 받는 주식배당은 “0”으로 함)
 - 기타의 재산 : 취득당시의 자산의 정상시가(법 제52조)
 -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차감, 즉 정상시가 - 분여받은 이익
 - 주식 아닌 기타의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무액면주로 받는 경우 무액면주의 가액 : 주식발행 결의일의 자본금/발행 주식총수로 계산함.
-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0. 6. 8 개정)
 -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

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0. 6. 8 개정)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0. 6. 8 개정)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0. 6. 8 개정)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② **주식소각 2년내의 무상주식(취득가액은 0입)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봄**
- ◎ **주식소각 · 자본감소 · 감자시 : 2년내 받은 무상주(자본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재원)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봄.**
- ◎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0).** 따라서 의제배당금액계산시 공제될 주식취득소요원가 금액은 없음.
- ◎ **2년내 기간중 주식처분했다면 기존 주식과 무상주 주식을 비율대로 처분한 것으로 계산하여 1주당 장부가액은 소각후 장부가액÷소각후 주식총수로 계산함.**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동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의 의제배당 (법 제16조제1항제2호)

① 일반이익잉여금 자본전입액면가액의 익금산입

상법 제461조제1항은 법인결산확정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이나 준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잉여금의 일부나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전입하는 금액에 대한 무상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총자본금지분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증자에 불과한데, 주주 등인 법인이 무상주를 수령하면 무상주를 교부한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이 무상주수령법인에게 배당되었다고 의제한다. 이 중 법인의 일반 이익잉여금의 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현금배당을 대신한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본 호가 익금산입 규정하고 있는데 잉여금의 자본전입결의일을 익금산입시기로 한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자본거래로 보고 법인의 순자산증가원인으로 보지 않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본거래적 잉여금의 배당액은 향후 당해 주식의 외부매각이나 거래 및 법정평가시만 익금에 산입한다.

1)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산입

①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증가 아님

본 호는 잉여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금액을 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잉여금자본전입결과의 무상주는 그동안의 영업활동 결과 축적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본 호에 따라 전자는 순자산 증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후자는 순자산 증가로 보지 않아 익금에 불산입한다는 뜻이다.

② 회계학상의 단가조정 회계처리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등을 받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면 유가증권계정의 장부가액에는 증자·감소·평가증감 등의 변함이 없다. 단지 당해 유가증권의 주식수만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 취득단가는 당연히 하향조정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로서 장부가액의 수정을 설명한다.

구 분	회사의 구주 취득현황	무상주 1,000주 수령시
주 식 취 득 수	1,000주	2,000주(1,000⊕1,000)
주 식 취 득 단 가	10,000원	5,000(=10,000,000÷2,000주)원
주 식 가 액	10,000,000원	10,000,000원

③ 무상주 수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상기의 비교에서 보듯이 무상주를 대가없이 받더라도 주식의 장부가액은 10,000,000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단지 주식 취득단가만이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되었다.

$$10,000,000\text{원(주식가액)} \div 2,000\text{주}(=1,000\text{주}+1,000\text{주}) = 5,000\text{원}$$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배당의 경우도 장부취득가액을 수정하지 않으나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사항이다.

④ 세무상의 액면 익금산입

세무상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계정과목의 자리바꿈에 불과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지 않고 나중에 매각시 실제의 유보이익이 익금으로 귀속된다. 이를 위해 법인은 무상주 수령시 익금에 산입되었던 사항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유보시키고 별도의 비망계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무상주 수령시 익금산입유보되었던 금액은 매각시 손금추인되어 기업회계상의 처분손익계정금액과 상계된다.

2)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불산입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① 열거된 자본거래만 익금불산입

본 호의 단서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수령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익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 등의 자본거래로 인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본거래차익의 익금불산입이라는 본 법 제17조의 열거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상법 제459조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 열거된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완전모회사 증가자본초과액, 결손보전초과금액, 합병초과액, 회사분할시 자산이전차익금, 기타 자본거래잉여금 등만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상 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1. 4. 14 개정)

②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무상주의 익금산입여부

- ◎ 배당의제로 익금산입되는 경우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자기주식소각의 중 소각일부터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금액(자기주식소각시점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시 기간제한없이 과세),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채무면제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금액
- ◎ 익금산입되지 않는 배당관련 금액 : 일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자본감소차익·감자차익 등)의 자본전입, 자기주식소각의 중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된 소각의 자본전입금액 등임.

③ 합병 및 분할평가차익의 의제배당

종전까지는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합병차익 중 합병자산평가차익 등(합병평가차익 상당액,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의 해당액)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었고, 분할자산평가차익 등(분할평가차익상당액,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해당

액)도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그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이연의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9. 12. 31. 법률 개정에 따라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는 주식 등의 가액은 모두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2010. 7.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주 취득의 장부단가조정

본 호 단서에 규정하는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취득의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배당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순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아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데 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는 회계처리와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무상주 수취시 주식 등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식 등의 수량만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주식의 단가조정은 다음과 같이 1주당 배정주식 수를 반영하여 배분 계산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text{주 또는 }1\text{좌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 등 }1\text{주 또는 }1\text{좌당 장부가액}}{1 + \text{구주식 등 }1\text{주 또는 }1\text{좌당 신주식 등 배정수}}$$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받을 때 익금산입되는 의제배당에서 일단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무상주는 결국 매각시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무상주배당에 대한 향후 매각 등 거래에서도 계속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무상주수취는 주식의 장부상 단가가 인하되고 동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각 주식 단위별로 매각차익이 커져서 과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종의 과세이연효과가 있는 사항이다.

3)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불산입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주의 익금불산입

앞에서 설명한 상법상 자본준비금 이외에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무상주 수취시도 익금에 산입하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도록 본 호 단서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법인은 무상주 수령 후 당해 주식을 재평가할 수도 있다. 당해 주식이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수취한 무상주라도 이는 익금산입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았고 재평가차액의 계산도 익금불산입되므로 세무상 아무 불이익이 없고 세무조정 문제도 없다.

②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산입

그러나 본 호는 일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면서도 ()로 “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평가 세율이 1%인 토지의 재평가차액관련 자본전입의 무상주 금액은 익금산입한다는 뜻이다.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98년 4월 10일 개정의 신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 가능자산으로 전격 포함되었는데, 대신에 토지재평가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세무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그러나 동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 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음)하면서 법인세과세라는 불이익을 상쇄시키기 위해 재평가세율을 3% 대신 1%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평가제외되었던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법 차원에서 익금산입한다는 뜻은 일종의 당기이익으로 보기 때문인바,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자본전입 무상주도 주주가 법인의 일반이익을 받아 간다고 보아 의제배당 소득으로 익금산입(즉 익금불산입사항에서 제외함)한다.

이러한 익금산입은 99년 1월 1일부터의 자본전입 결의·등기에 대해 적용하며, 98년 12월 31일까지 자본전입했거나 자본전입결의하였다면 기존이익보호 차원에서 98년중의 의제배당귀속으로 보아 종전기준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 개념이 적용되었었다.

③ 재평가차익 자본전입의 연천별 익금산입·불산입 구분

㉔ 83년까지 취득토지로서 84년 후 1회 이상 재평가, ㉕ 84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토지 → 재평가지 차익은 강제익금산입함(동액 손금산입은 선택가능). 대신 재평가세율은 1%임 → 이러한 적립금의 자본전입무상주는 일종의 잉여금 전입개념으로 보아 익금산입함.

㉔㉕ 이외의 모든 자산재평가 → 차익은 익금불산입, 재평가세율은 3% → 무상주전입시 익금불산입

④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의 선입선출 및 안분계산 방법

㉔ 잉여금 자본전입시 익금산입되는 것,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잉여금의 원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원에 대한 순서 및 어떤 계정금액이 자본에 전입되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㉔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일부 자본전입시 전입순서

- ① 피합병자산 승계평가금액 - 당초 장부가액
- ②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 합병대가 총합계액
-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의제배당액
-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

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시 안분계산

- ㉔ 재평가세율 1% 적용분(토지) 재평가차액
- ㉔ 재평가세율 3% 적용분(83년까지 취득한 토지로서 평가안했던 토지 토지 제외 모든 자산) 재평가차액

재평가차액, 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시 ㉠금액, ㉡금액 총액비율에 따라 안분전입하여 ㉠의제배당액 비율분은 익금산입하며 ㉡의제배당비율분은 익금불산입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98년 4월전에 구법으로 실시한 재평가적립금과 신법으로 실시한 재평가적립금(토지익금산입분, 익금불산입분)이 모두 있을 때, 자본전입하였다면 과거 익금불산입분을 먼저 전입하는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모든 적립금비율대로 나누는 총 평균배분방법을 사용 한다는 뜻이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2010. 6. 8 개정)

⑤ **자산재평가 관련 차액적립금의 회계사무처리**

▣ 재평가·재평가증금액의 세무회계상 처리방법 ▣

재평가차액 평가증금액	구 분	법인세 계산	특별부가세 계 산	재평가 세 율	무상주 전 입
토 지	83년전 취득후 무평가	영구익금불산입, 나중의 양도차손은 손금부인	취득원가 아 님	3%	익 금 불산입
	83년전 취득후 1 회 평가	익금산입, 동액손금 산입 가능(선택) 과세이연됨.	취득원가 아 님	1%	익 금 산 입
	84년후 취득후 무평가	익금산입, 동액손금 산입 가능(선택) 과세이연됨.	취득원가 아 님	1%	익 금 산 입
건 물	평가증원가(차변)	감가상각가능(당연 손금 가능)	취득원가 아 님	3%	익 금 불산입
	재평가차액(대변)	익금불산입	해당 없음		
기계장치	평가증원가(차변)	감가상각가능(손금가능)	해당 없음	3%	익 금 불산입
	재평가차액(대변)	익금불산입			
주 식	평가증원가(차변)	필요비용반영	해당 없음	3%	익 금 불산입
	재평가차액(대변)	익금불산입			

▣ 토지재평가차액·재평가증금액의 세무회계상 처리방법 및 장기적 세금여부 ▣

구 분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계산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평가증금액	재평가 세 율	향후 매각시 과세여부	양도 차손	향 후 자본전입
① 83년 말 까지 취득 후 무평가	익금불산입, 양도차손은 손금부인(평가증금액은 원가로 인정, 절세효과)	취득원가 아 님	3%	과세안됨	불인정	익 금 불산입
② 83년 취 득 후 1회 평가	익금산입, 동액손금산입가능(평가증금액은 원가인정, 그러나 손금총액이 익금으로 됨)	취득원가 아 님	1%	과세됨 (익금)	인정	익금 산입
③ 84년 후 취득 후 무 평가(기존 법으로 평가불능)	익금산입, 동액손금산입가능(평가증금액은 원가인정, 그러나 손금총액이 익금으로 됨)	취득원가 아 님	1%	과세됨 (익금)	인정	익금 산입

4.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시 자사주소유 법인외의 다른 법인 주주 등 증가지분비율 주식가액의 익금산입

(법 제16조제1항제3호)

① 자기회사주식 보유법인의 무상주 타법인 주주 취득시의 손자산증가익금

제2호의 단서는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당해 자본전입법인으로부터 무상주를 수취하는 법인은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무상주 수취금액은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호는 이러한 익금불산입 무상주와 관련해 당해 주식이나 출자금을 당법인이 자기주식 등으로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무상주를 배정받지 않고 다른 주주나 출자자가 배정받도록하는 경우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수취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다른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법인 주주도 자기 무상주 해당비율은 익금불산입되지만 자사주 부분으로 인해 자기 원래지분

보다 증가된 부분은 익금산입한다.

당해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를 1차적으로 수취할 권한이 있는 법인은 이러한 금액은 일종의 자본거래로 보아 무상주 수령시 순자산의 증가가 아닌 것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포기한 것에 대해 다른 법인이 수취하면 이는 자본거래가 아니고 이익증가 무상수증거래도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하여 배정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으로 무상주발행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시 무상주 포기로 인한 주식의 재배정은 무상수증이익이나 증여로 간주되어 왔는데, 본 호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익금산입되지 않는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식이라도 자기포기주식을 타인이 수취하면 무상수증이익의 일종이 되므로 의제배당으로 간주한 것이다.

5.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 제16조제1항제4호)

① 해산 법인주주의 잔여재산분배차액

자연인의 사망과 같이 법인은 청산절차를 통해 소멸되고 없어진다. 해산이란 법적인 청산절차를 포함하여 법인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자연인 사망시의 재산 상속과 같이 법인의 해산시에도 잔여재산이 분배된다. 법인해산시 청산절차로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고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잔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또한 법인청산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주식보유하여 남은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의제배당가액	=	해산시 해산법인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	---	--	---	--------------------------------

② 무상주가 포함된 경우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속에 타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가 해산법인 주식에 포함된 경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라면 이의 액면가액은 이미 익금산입되었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이중과세가 배제된다.

그러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의 주식단가만 하향조정되고 세무상으로도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배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6.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 제16조제1항제5호)

① 합병교부가액의 취득원가차액의 개념

합병은 사업상 혹은 사업 이외의 제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법률행위로서 합병으로 인한 합병교부대가의 의제배당액은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기서 합병시의 의제배당액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대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장부외에 감추어진 비밀적립금이나 자산가치의 증가분 및 영업권을 인정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대가를 초과하여 지불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는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병차손이 되나, 합병차손금액이 의제배당액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합병법인의 합병차손은 교부주식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반면, 의제배당액은 합병법인에게서 취득하는 주식과 금전 기타 재산 등의 합병교부금의 총 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 주식소유자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함에 소요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장부상 자기자본총액과 주주의 주식취득원가가 다르며 당연히 차이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합병차손금액이 크고 취득원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의제배당액이 크다.

② 합병의제 배당 계산산식

합병으로 인해 소멸법인 기존 주주가 교부받는 총 대가가 당초 주식취득 투입원가보다 크다면 무조건 의제배당금액이 생긴다.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

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의제배당액</div>	=	합병시 소멸법인주주가 취득하는 합병법인주식 또는 출자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액(합병교부금)의 합계액	-	소멸법인 현재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식(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투입금액
--	---	--	---	---

- ③ 합병대가·분할대가에 2년내 포함주식가액 및 합병·분할양도소득 법인세 등 제외 합병대가나 분할대가에서 2년내 취득한 포함주식가액이나 양도소득관련 법인세·지방세납부액은 합병대가·분할대가 계산에서는 포함한다. 그러나 의제배당액의 일종으로 익금산입은 되지 않도록 다음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6. 30 개정)

7.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법 제16조제1항제6호)

- ① 분할법인·분할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분할대가 주식취득 소요금액(자본감소액)이 의제배당임.
- ◎ 의제배당액 : 분할법인주주·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초 주식취득 소요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 ◎ 의제배당액 계산산식 및 방법 : 의제배당액 = 분할대가(분할관련 취득주식가 ⊕ 금전·기타 재산 등) ⊖ 분할법인·상대방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된 금액(= 분할법인이 존속되면 자본감소액, 분할법인이 소멸되면 당초 주식취득원가)
- ② 분할대가에서 포함주식가액 및 청산법인세 등은 제외
- 분할대가·합병대가 자체를 계산할 때 포함주식가액과 양도관련 법인세 등

대납액은 합병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나 기존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이익으로 보므로 합산하지만, 의제배당의 익금산입은 실제 귀속된 금액을 합산하므로 2년내 포함주식가액이나 법인세 등은 실제 귀속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다. 상기 시행규칙 제7조가 규정하고 있다.

III. 의제배당금액 결정 및 손익귀속시기 (법 제16조제2항)

1. 의제배당금액의 결정

① 금전액·주식액면가액·취득가액

의제배당시 분배 및 배당되는 금액에는 금전·주식·출자가액 및 기타 재산의 가액 등이 있는데 금전은 표시금액을 말하고, 주식·출자가액은 당해 주식 등의 액면가액, 주식배당 발행금액 혹은 출자가액을 말한다. 물론 교부되는 주식이 발행가액으로 표시되면 발행가액이다. 이밖에 금전·주식 이외에는 당해 재산취득시의 가액인데 정상가액이면 된다. 관련 시행령의 규정은 제14조인데 앞의 각 의제배당 설명에 열거하였다.

② 무액면주식은 평균장부단가

무액면주식은 발행법인의 장부상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주식발행법인 자본금÷발행주식총수).

2. 의제배당 및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

① 법적 권리확정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주총결의일, 자본전입결의일, 잔여재산확정일, 퇴사·탈퇴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등을 말한다고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였는데 앞에 열거하였다.